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제 목 유아(6세 미만) 전세버스 이용시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철저 안내

- 1. 서울시 버스정책과-16482호(2024.10.21.)와 관련입니다.
- 2. 서울시에서는 6세 미만 유아가 탑승하여 전세버스 이용 시 「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」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하여 운행하고, 차량이 상시적 으로 유아용 보호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도록 요청한 바, 각 사에서는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제2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) ⑥ 운송사업자는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착용하는 좌석 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(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 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- ※ 붙 임 : 서울시 공문 사본 1부.
- 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www.tourbus.or.kr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[끝]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 이 사 장 오 성



담 당 부 장 상 무 박영수 라영석 박호동 이사장 협조자 서전버조 24- 172호 (2024.10.22)접수 (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우 05510 / http://www.tourbus.or.kr 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